##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병진 의원 등 7인

#### 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#### 3. 제안이유

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8조)
- 행정부지사 →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- 나.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)

#### 5. 검토내용

-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  -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  -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분장사무 규정 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  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